

「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9월 2일

나. 발 의 자: 정지원 의원

다. 찬 성 자: 김낙관, 김춘남, 소진혁, 양진오, 장미경 의원(5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9월 2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9월 11일

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정 지원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에너지이용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, 에너지 복지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정의(안 제3조)
-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7조)
- 기능(안 제11조)
-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(안 제20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에너지법」 제7조, 제16조의2, 제16조의3
- 「에너지법 시행령」 제13조의2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5. 9. 2. ~ 9. 7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에너지 복지 개념을 반영하고 각종 에너지 복지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3조에 ‘에너지 복지’와 관련된 정의를 신설하고, 안 제7조에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시에도 에너지 소외 계층과 소외지역 등에 에너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20조에는 각종 에너지 복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다만, 에너지 복지 사업의 대상인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선정 시 관련 부서와의 자료공유 및 협업 등으로 실제로 에너지 복지가 필요한 대상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